



제 422회 국회(임시회)
제 2 차 교 육 위 원 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학의 장애학생 상담 지원 의무 추가〉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45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 검토의견	2
------------------	---

※ 참고자료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7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경숙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1. 20.

다. 회 부 일 : 2025. 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인력 배치, 취학편의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적·인적 지원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진로·취업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장애학생이 학업적·사회적·정서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사항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추가하여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6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사항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추가하여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지속적인 상담지원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은 「교육기본법」 제18조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²⁾으로 하는 것으

1)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

로,

현행 특수교육법에서는 대학의 장이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및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특별지원위원회(제29조)³⁾와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제31조에 따른 편의제공 및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제30조)⁴⁾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제31조)⁵⁾ 의무규정을 두어 장애학생의 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특수교육법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특수교육법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둬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2의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교직원·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특수교육법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등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이렇듯 장애대학생에 대한 물적·인적 지원이 현행 특수교육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대학생의 진로·취업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장애대학생이 학업적·사회적·정서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에 개정안은 이에 개정안은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제공 사항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지속적인 상담지원”의 의무를 추가하고 있음.

< 장애유형별 대학 재학생 현황 >

(2024.8. 기준, 단위: 명, %)

구분	시각	청각	지체·뇌병변	지적·자폐	기타	합계
2024년	1,307	1,204	4,494	2,170	1,062	10,237
	12.8	11.8	43.9	21.2	10.4	100

자료: 교육부(대학정보공시)

개정안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이라는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바, 현행 특수교육법 제2조⁶⁾ 등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장애학생은 아니지만 소심하고 걱정 많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6)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은 성격, 전공에 대한 불만, 저조한 학업 성취, 자기 능력에 대한 회의 및 부담감을 갖는 학생⁷⁾, 엘리트 스포츠로부터 중도 탈락한 대학생 운동선수들⁸⁾ 등에게도 학교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사회·심리적 갈등 등에 대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법 상 장애학생이 아닌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됨.

다만, 특수교육법의 입법 취지⁹⁾와 동법 제31조제1항이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 제31조제1항제6호의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는 표현은 장애학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로 볼 수 있는 동법 제2조 및 제29조부터 제31조 등에 따라 개정안의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도 상담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특수교육법이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 제공의 수단으로서 상담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7) 홍수현,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생의 사례 연구,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인간이해 제23집, p 69., 2002.7.

8) 신정옥, 중도탈락 대학운동선수의 학교생활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p2. 2010.8.

9) **특수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 · 가족지원 · 치료지원 · 지원인력배치 · 보조공학기기지원 · 학습보조기기지원 ·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경우 이를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의의와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장애학생 중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 지원을 제도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개정안과 동법 동조 내 각 호의 조문 상 체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¹⁰⁾

개 정 안	정 부 수 정 안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 ----- ----- -----.
1. ~ 5. (생략)	1. ~ 5. (개정안 같음)
6. <u>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지속적인 상담지원</u>	6. <u>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상담지원</u>

문 의 처
02)6788-5193

10) 개정안의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이라는 모호성을 제거하고, 특수교육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조문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한 상담지원”으로 수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 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